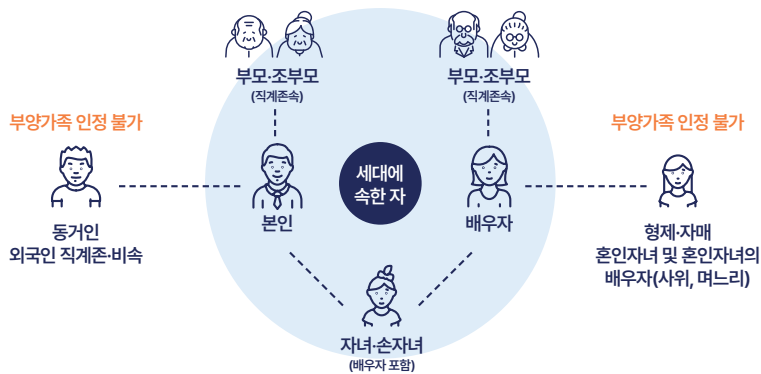


부양가족수 적용기준

-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직계존속 및 미혼의 직계비속 (청약자 본인은 제외)
- 배우자
 -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
 - *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
- 무주택 직계존속
 -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(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)
 - * 만60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및 분리된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) 주택 소유 시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(* 부양가족 여부 판단 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) (단,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소형·저가 확인 시 부양가족 산정 가능)
 - *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불인정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
- 미혼인 직계비속 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
 - 만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: 청약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 -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 :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 -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
 - * 이혼한 자녀는 '미혼인 자녀'로 보지 않으며,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(만30세 미만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
 - (만30세 이상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
부양가족수 범위 (세대에 속한 자 중 부양가족 자격요건을 갖춘 자)



부양가족수 범위 (세대에 속한 자 중 부양가족 자격요건을 갖춘 자) -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
■ 부양가족

